



제1590호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9 4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2 9 5 호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공	고 제 2 9 9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공고	13
○ 공	고 제 3 0 0 호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 공	고 제 3 0 4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1
○ 공	고 제 3 0 5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0
○ 공	고 제 3 0 6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6
○ 공	고 제 3 0 7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 고 및 의견수렴	68

고 시

○ 고	시 제 1 6 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76
○ 고	시 제 1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03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9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2.5. ~ 2021.2.19.
3. 공고대상 : 이륜차 5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01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11. ○ 견인일 : 2021.2.1.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매소홀로 1229 운연역 1번출구 앞 자전거보관함 옆
	2021-0002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1. ○ 견인일 : 2021.2.9.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남동대로726번길 5-16 한민교회 건너편 공원 앞
	2021-0002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1. ○ 견인일 : 2021.2.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현동 744-5 공영주차장 앞
	2021-0003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2. ○ 견인일 : 2021.2.10. 이후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동 48-12 센트럴시티 주차장
	2021-000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2.3. ○ 견인일 : 2021.2.22. 이후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남동동로63번길 12 예일엘텍 앞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 고
1	2021-0001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매소홀로 1229 운연역 1번출구 앞 자전거보관함 옆	2021.2.1. 이후	(주)인천폐차사 업소	
2	2021-0002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남동대로726번길 5-16 한민교회 건너편 공원 앞	2021.2.9. 이후	(주)서울폐차사 업소	
3	2021-0002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 744-5 공영주차장 앞	2021.2.9. 이후	(주)인천폐차사 업소	
4	2021-0003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 48-12 센트럴시티 주차장	2021.2.10. 이후	기전산업(주)폐 차사업소	
5	2021-0004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남동동로63번길 12 예일엘텍 앞	2021.2.22. 이후	기전산업(주)폐 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295 호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12.22. 공포, 2021. 6.23. 시행 예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 (안 제2조제1항)
 - (현행) **5명** → (개정안) **7명**
- 연차보고서 제출사항 정비 (안 제5조의2)
 - 제출시기 : (현행) **제2차 정례회에** → (개정안)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 제출내용 : (현 행) 전년도 재산등록 →
(개정안)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감사실)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75, FAX 453-20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12.22. 공포, 2021. 6.23. 시행 예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 : (안 제2조제1항)
 - (현행) **5명** → (개정안) **7명**
- 연차보고서 제출사항 정비 : (안 제5조의2)
 - 제출시기 : (현행) **제2차 정례회에** → (개정안) **제2차 정례회 개최 전 까지**
 - 제출내용 : (현 행) 전년도 재산등록 →
(개정안)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신설)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직자윤리법」(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 예정)
제9조 및 제20조의2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 교육자 또는”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로 한다.

제5조의2 중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을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 6.23.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구성) ①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 (구성) ① ----- ----- ----- ----- <u>7명</u> ----- ----- ----- -----.
1.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 <u>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u> ----- ----- -----.
2.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 -----
3. 자치행정국장	3. -----
제5조의2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연차보고서 제출) ----- ----- <u>제2차 정례회</u> <u>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u> <u>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u> ----- ----- -----.

[참고자료]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299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구4241외 6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21. 2. 5.(금) ~ 2. 20.(토)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21년 2월 5일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1년 1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구4241	조*상	2021-01-08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번길 *, ***동 ***호 (간석동, **아파트)
2	**오0576	김*미	2021-01-08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 (논현동, *****아파트)
3	**나3841	양*빈	2021-01-12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동 ***호 (구월동, *****)
4	**보7559	강*정	2021-01-15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번길 **, *동 ***호 (간석동, ****주택)
5	**주9956	구*연	2021-01-15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 *동 ***호 (만수동, ***)
6	****파4411	최*실	2021-01-21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 (구월동, ***)
7	**서9220	박*욱	2021-01-26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00호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대관 근거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강료 감면 대상 조항 변경 : (안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 수강료 반환 사유 추가 및 기준 변경 : (안 제9조, 별표 4)
- 강사 결격사유 추가 : (안 제11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기준 변경 : (안 제18조)
- 사용자 준수사항 신설 : (안 제19조)
- 수강료 기준 변경 : (안 별표 3)
- 시설 사용료 변경 : (안 별표 5)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 평생학습관 / ☎ 453-6054, FAX 453-58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외부 대관 근거 및 기준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해 열려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 주요내용

- 수강료 감면 대상 조항 변경 : (안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 수강료 반환 사유 추가 및 기준 변경 : (안 제9조, 별표 4)
- 강사 결격사유 추가 : (안 제11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기준 변경 : (안 제18조)
- 사용자 준수사항 신설 : (안 제19조)
- 수강료 기준 변경 : (안 별표 3)
- 시설 사용료 변경 : (안 별표 5)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별표 2와 같다.”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수강료 등”을 “수강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강료 감면”을 “수강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을 각각 “면제”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카드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다. 다만, 1 가

정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을 “관련하여”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제10조제2항 중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초빙의”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경우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설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로,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로,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을 “사용 목적 및 사용예정일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사용료 등”을 “사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남동구”를 각각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용일 5일”을 “사용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강좌 운영시간	기준금액	비 고
10시간 이하	15,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시간 이하	30,000원	
30시간 이하	45,000원	
30시간 초과	60,000원	

[별표 4]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수업시작 전 -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 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전액
		3) 수업시작 이후 -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시설명	면적	용도	기준	사용료	비 고
펼침터	154.91 m ²	각종 전시 (갤러리)	1일	30,000 원	◦최대 사용기간 : 15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채움강당	396.88 m ²	강연, 발표회, 공연 등	1시 간	50,000 원	◦휴일 또는 18:00 이후 사용시 사용료 20% 가산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프로그램명	(반)		
요 일		시 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수 강 료 감 면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국가유공자증 가족: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기준)		신분증
	다문화가족(다문화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1 가정 당 연 1회에 한함)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접 수 증

접수번호 :

프로그램명	(반)		
요 일		시 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신청서

수 강 생	강좌명	() 반)		
	성 명		생년월일	
수 강 료	금 원정 (W)			
감 면 률	전액감면			
실 제 수강료	금 원정 (W)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면제사유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 출 서 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국가유공자증 가족: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기준)	신분증
	다문화가족(다문화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1 가정 당 연 1회에 한함)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 강 생	강 좌 명	(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납부수강료	금 원정 (W)			
반환사유		수강료 납부일		
공제액	금 원정 (W)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 내역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기타 :			
반환액	금 원정 (W)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1. 냉난방 2. 음향시설 3. 빔프로젝터 4. 기타(,)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일간)	사용 횟수	오전 오후	회 회	합 계	일 회	
사용료	금 원정						
참가예정인원	일 반 : 명 어린이 : 명	학생(중·고생) : 명 계 : 명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뒷면)

서 약 서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 본인은(본 단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같은규칙 제1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평생학습관 시설 및 장비·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같은규칙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용중지 명령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명 (단체명)		연락처	
	주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일시			사용장소	
면제사유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유선 :
	단체명			무선 :
	주 소		이 메 일	
사용시설			사용료 납부일	20 . . .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정 (₩ 원정)		사용기간	
반환금액	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대장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u>별표 2와 같다.</u> 다만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 ----- ----- <u>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u> ----- ----- ----- -----
제7조(수강료 등) ① (생략) ② <u>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u>	제7조(수강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8조(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제8조(수강료 면제) ①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
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
국인근로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신청
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
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 설>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
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카드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
다. 다만, 1 가정 당 연 1회로 한
정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북한이탈주민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
로자

<삭 제>

② ----- 면제
-----별지 제2호서식
-----면제----- 제출
-----.

제9조(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
강료를 반환한다.

1. 과오납한 경우

1. ~ 3. (생 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④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및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강사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결격사유)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제4호-----

-----.

<삭 제>

④ ----- 관련
하여 ----- 않은

----- 따른다.

제10조(강사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
개모집 또는 추천·초빙의 ---
-----.

제11조(강사의 결격사유) -----

1. -----

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2. 3.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 않다고 -----
--

2.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경우

제1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9호서식-----
---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사용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남동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남동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남동구 내 평생학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허가) -----
-----사용 목적
및 사용예정일 등-----

-----.

제16조(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7조(사용료 면제) ① -----

-----.

1. ----- 구-----

2. ----- 구-----

3. 구 -----

4. (현행과 같음)

② -----

제출-----.

제1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이 1개
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
액 반환

3.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
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안
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50퍼센
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① -----

---. <단서 삭제>

② -----

-----.

1. (현행과 같음)

2. 사용일 -----
않을 -----

<삭 제>

4. ----- 않
을 -----
----- 금액 -----

③ -----
----- 별지 제11호서
식----- 제출
-----.

제1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
자는 허가받은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04호

「남동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 (안 제7조, 제8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율 규정 정비 (안 제7조)
 -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

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안 제7조, 제8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율 규정 정비(안 제7조)
 -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74조, 제81조, 제8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조에”를 “제3조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은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u>제3조에 따른다.</u>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 ----- --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u>제3조를 ----.</u>
제1절 <u>재산분</u>	제1절 <u>사업소분</u>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 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 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 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 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 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u>재산분</u> 의 납세의 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 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 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u>사업소분</u> ----- ----- ----- ----- ----- -----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u><삭 제></u>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05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 (안 제15조)
 - “재산분” → “사업소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안 제15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7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u>재산분</u> 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 ----- ----- <u>사업소분</u> ----- ----- ----- -----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06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현행 제2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6조의2)
- 지방세 감면결정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12.29.)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현행 제2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조의2)
 ○ 지방세 감면결정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제14조)
 -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지방세 감면 안내’로 개정
 -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개정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제84조, 제183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32조, 제38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감면”을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청장이 제1항”을 “제1항”으로,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을 “구청장은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로,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를 “따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산출세액	감면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감면 사유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장 감면	<삭 제>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1. 삭 제	
2. 삭 제	
<신 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2

<u>제3장 보칙</u>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생략) ② <u>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u> <u><삭 제></u>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u>----- 구청장은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 따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u>
--	--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8. 12. 24.>

② ~ ③ 생략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② ~ ③ 생략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② ~ ⑤ 생략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07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정비 및 별지서식 개정
(안 제9조, 제10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별지 제7호, 제8호서식 개정
-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법률 정비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규칙(안): 별첨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정비 및 별지서식 개정(안 제9조, 제10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별지 제7호, 제8호서식 개정
-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법률 정비(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법」 제74조, 제83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u>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u>	제3장 <u>주민세</u>
제1절 <u>주민세(재산분)</u>	제1절 <u>주민세(사업소분)</u>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 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u>재산분</u>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 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 호서식의 <u>주민세(재산분)</u>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 ----- ---- <u>사업소분</u> ----- ----- ----- ----- <u>(사업소분)</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 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 식의 <u>주민세(재산분)</u>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 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 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통징수) ----- ----- ----- ----- <u>(사업소분)</u> ----- ----- <u>법 제83조제6</u> <u>항</u> ----- -----.

[참고자료]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6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2월 08일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소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①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218,947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18,947	100.0	
소 계	141,062	64.5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7,517	21.6
	제3종일반주거지역	53,152	24.5
	준주거지역	40,393	18.4
일반상업지역	73,189	33.3	
자연녹지지역	4,696	2.2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일원	171,979 (73,668)	-	-	-	-

주1)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2	7,041	123,766	5	3,059	58,541	13	2,280	30,732	4	1,702	34,493
기정	대로	2	1,413	37,048	-	-	-	1	343	10,098	1	1,070	26,950
기정	중로	7	3,994	73,401	2	2,763	55,581	4	734	11,010	1	497	6,810
기정	소로	13	1,634	13,317	3	296	2,960	8	1,203	9,624	2	135	733

주)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74	30~34	보조 간선	343	논현동 111-407 (논현2지구계)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2007-53호	
기정	대로	3	76	25~31	집살 도로	1,070 (583)	대3-23	중1-90	일반 도로	인고 제2002-310호	
기정	중로	1	90	20	국지 도로	180	중1-302	대3-76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 간선	2,583 (296)	소래·논현지구 지구계남동측	대1-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58	15~18	국지 도로	127	중(소래) 3-2	대3-7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 도로	390 (128)	대3-76	논현동 21-2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2	110	15~18	국지 도로	110	대3-76	중(소래) 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소래1	18	국지 도로	107	대3-76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중로	3	소래2	12~16	국지 도로	497	대2-74	중1-302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0	대3-76	소1-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50	대3-76	소1-4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4	9.5~10	국지 도로	232	소2-1	대2-74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 도로	127	중2-109	대2-74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1997-23호	
기정	소로	1	소래3	10	국지 도로	14	중1-302	논현동 111-252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0	대로3-76	109-8호 (소래초교)	일반 도로	인고 제1994-208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0	대3-76	소1-8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40	중1-90	중(소래) 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소래4	8	국지 도로	112	소1-3	소1-4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5	8	국지 도로	100	중2-58	소2-9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6	8	국지 도로	79	소2-9	소(소래) 2-7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소래7	8	국지 도로	204	소2-9	소(소래) 3-2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소래8	4	특수 도로	31	중1-302	소(소래) 2-7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04	논현동111-10	중1-302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2017-75호	역사 공원 중복 결정

※ ()는 구역 내 사항임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111-36 일원	739	-	73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9 일원	4,444	-	4,444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3,387	감)12	3,375	인고 제2011-225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주)주차장③은 소공원② 전체 4,610㎡ 중 3,375㎡ 중복

○ 주차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주차장	▶ 면적변경 · 면적: 3,387㎡ → 3,375㎡ (감 12㎡)	▶ 분할 측량 결과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

(1)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	일반 광장	남동구 논현동 111-329 일원	864	인고 제2011-225호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	역사 공원	남동구 논현동 111-13 일원	4,264	인고 제2011-225호	소로 3-10호선 중복결정
기정	②	소래 소공원	소공원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4,610	인고 제2012-324호	지하주차장③, 유수지 일부 중복결정

주1) 소공원②은 지하주차장③ 3,375㎡ 전체중복, 유수지 전체 1,632㎡ 중 680㎡ 중복

주2) 역사공원①은 소로3-10호선 634㎡ 전체 중복

(3)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3번지 일원	1,558	인고 제2011-225호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810-2	1,872.9	인고 제2011-225호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810-1	2,677.8	인고 제2011-225호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75 일원	322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70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154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④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87 일원	271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⑤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60 일원	183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다)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남동구 논현동 66-98 일원	1,639	감)7	1,632	인고 제2012-324호	소공원②과 중복결정

주) 유수지는 소공원② 전체 4,610㎡ 중 680㎡ 중복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수지	▶ 면적변경 · 면적: 1,639㎡ → 1,632㎡ (감 7㎡)	▶ 분할 측량 결과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라)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하수도	남동구 논현동 66-104 일원	494	감)2	492	인고 제2011-225호	오수중계 펌프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하수도	▶ 면적변경 · 면적: 494㎡ → 492㎡ (감 2㎡)	▶ 분할 측량 결과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계	32,753	-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 1BL	10,236	1	109-202대	160	
		2	109-200답	320	
		3	109-198대	456	
		4	109-158대	51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59답	20	
			소계	530	
		5	109-157대	623	
		6	109-156대	570	
		7	109-165대	227	
		8	109-167대	225	
		9	109-164대	17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69대	140	
			소계	314	
		10	109-163대	18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70대	139	
			소계	321	
		11	109-99대	331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2	109-103답	331	
		13	109-100답	188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51답	142	
			소계	330	
		14	109-152답	189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220답	130	
			소계	319	
		15	109-153답	21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221답	129	
			소계	343	
		16	109-166대	683	
		17	109-97답	1,455	
		18	109-69잡	9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9	109-70대	198	
		20	109-71대	120	
		21	109-72대	205	
		22	109-73대	600	■ 공동개발 지정
			109-215대	398	
			111-26대	122	
			111-27대	78	
			소계	1,198	※ 필지수 : 4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1BL (계속)	(10,236)	23	111-29대	108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55대	10			
			소계	118			※ 필지수 : 2개
		24	111-28대	208	■ 공동개발 지정		
			111-32전	23			
			111-453대	10			
			111-459전	1			
			소계	242			※ 필지수 : 4개
		도로	111-14도	114	※ 비건축 부지		
			109-159답	2			
			109-160도	7			
			109-161도	7			
			109-162답	280			
			109-168도	62			
			111-467도	7			
			111-468도	10			
			111-477도	26			
			111-478도	3			
		소계	518	※ 필지수 : 10개			
주 2BL	5,031	1	109-19주	857			
		2	109-35대	457			
		3	109-94잡	742			
		4	109-232잡	131			
		5	109-37대	432			
		6	109-38대	146	■ 공동개발 지정		
			109-40대	1,557			
			109-182답	5			
			109-244대	18			
		소계	1,726	※ 필지수 : 4개			
		7	109-177답	364			
		8	109-42대	159	■ 공동개발 지정		
			109-181전	2			
소계	161	※ 필지수 : 2개					
9	109-101답	161					
주 3BL	2,007	1	109-49대	110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2	109-50대	120			
		3	109-48대	108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4	109-140대	135			■ 공동개발 지정
			109-246대	17			
		소계	152	※ 필지수 : 2개			
		5	109-51대	147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	109-53대	99			
		7	109-52대	272			
		8	109-56대	46	■ 공동개발 지정		
			110-1대	230			
			소계	276		※ 필지수 : 2개	
		9	109-54대	39	■ 공동개발 지정		
			111-96대	182			
		소계	221	※ 필지수 : 2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3BL (계속)	(2,007)	10	109-57대	45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4개				
			109-58답	36					
			110-3대	165					
			110-5대	41					
			소계	287					
		11	109-55대	1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11-97대	177					
			111-98대	28					
소계	215								
주 4BL	3,948	1	109-107답	25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09-235대	326					
			109-172답	48					
			소계	399					
		2	109-144대	41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80대	20					
			소계	437					
		3	109-145대	433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4	109-146대	547					
		5	109-142답	31					
		6	109-146대	41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09-147대	644					
			소계	716					
			109-58답	29					
		7	109-59답	271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소계	300					
			110-2대	314					
		8	111-101대	11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5개				
			111-102대	196					
			111-103대	23					
			111-3도	5					
			111-5도	1					
			소계	337					
			9	111-98대			7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11-99대			258		
		111-100대		135					
		소계		465					
주 5BL	4,714	1	109-118대	10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35답	7					
			소계	111					
		2	68-2대	126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6개				
			68-17대	110					
			68-18대	149					
			68-84전	1					
			109-36대	431					
			109-176대	739					
			소계	1,556					
		3	68-81전	13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68-82전	415					
			68-83전	670					
			소계	1,22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5BL (계속)	(4,714)	4	66대	405	
		5	66-44대	331	
		6	68-23대	20	■ 공동개발 지정
			68-78대	167	
			68-79대	1	
			소계	188	
		7	68-74차	157	■ 공동개발 지정
			68-75중	497	
			소계	654	
		도로	68-19도	207	※ 필지수 : 2개
			109-122도	40	
			소계	247	
주 6BL	6,817	1	68-20중	2,380	■ 공동개발 지정
			109-39전	27	
			109-122도	24	
			109-125답	4	
			소계	2,435	
		2	68-20중	46	■ 공동개발 지정
			68-38전	91	
			소계	137	
		3	68-23대	60	■ 공동개발 지정
			68-80대	131	
			소계	191	
		4	66-39대	379	
		5	68-24전	345	
		6	68-25전	198	
		7	68-39전	266	
		8	68-40전	317	
		9	68-26전	66	■ 공동개발 지정
			68-33전	250	
			68-37전	115	
			68-50도	4	
			소계	435	
		10	109-149대	751	
		11	68-77대	1,214	
		도로	68-19도	149	※ 비건축부지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25,998.9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 1BL	25,998.9	1	810대	25,998.9	

다)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계	27,523	-		27,523	준주거지역				
준 1BL	6,286	1	111-264대	20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7Lot ② 준1BL 8~9Lot ③ 준1BL 10~11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18Lot		
		2	111-251대	237					
		3	111-245대	200					
		4	111-246대	201					
		5	111-247대	200					
		6	111-248대	201	■ 공동개발 지정				
			111-249대	209					
		소계		410	※필지수 : 2개				
		7	111-250대	210					
		8	111-8대	356					
		9	111-487대 ※오기정정	171	■ 공동개발 지정				
			111-492대 ※오기정정	76					
			소계	247				※필지수 : 2개	
		10	111-154대	293					
		11	111-259대	297					
		12	111-263대	456					
		13	111-261대	603					
		14	111-256대	580					
		15	111-257대	478					
		16	111-258대	454					
		17	111-158대	273					
		18	111-260대	588	※ 비건축부지				
준 2BL	8,939	1	111-209대	22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2~3Lot ② 준2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	111-215대	241					
		3	111-192대	277					
		4	111-254대	203					
		5	111-295대	202					
		6	111-20대	877	■ 공동개발 지정				
			66-18잡	161					
			소계	1,038				※필지수 : 2개	
		7	111-210대	206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8	111-220대	206					
		9	111-211대	206					
		10	111-221대	207					
		11	111-212대	206					
		12	111-222대	206					
		13	111-213대	252					
		14	111-216대	420					
		15	111-217대	427					
		16	111-225대	352					
		17	111-226대	352					
		18	111-227대	352					
		19	111-255대	458					
		20	111-230대	601					
		21	111-265대	428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2BL (계속)	(8,939)	22	111-229대	48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3	111-228대	544			
		24	111-214도	405	※ 비건축부지		
		25	111-231도	436	※ 비건축부지		
준 3BL	2,920	1	111-152대	29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2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3Lot
		2	111-196대	1,407			
			112-1대	181	■ 공동개발 지정		
			112-2도	63			
			소계	1,651	※필지수 : 3개		
		3	111-56대	2			
			111-161대	519			
			111-173도	225	■ 공동개발 지정		
			111-174대	8			
			111-176대	223			
			소계	977	※필지수 : 5개		
준 4BL	3,498	1	111-300대	7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3Lot ② 준4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5Lot
		2	111-161대	24			
			111-173도	64			
			111-176대	1	■ 공동개발 지정		
			111-179대	383			
			111-235대	155			
			소계	627	※필지수 : 5개		
		3	111-173도	130			
			111-176대	4	■ 공동개발 지정		
			111-180대	343			
			111-235대	82			
			소계	559	※필지수 : 4개		
		4	111-56대	74			
			111-169대	183			
			111-170대	658	■ 공동개발 지정		
			111-173도	83			
			111-176대	73			
			소계	1,071	※필지수 : 5개		
		5	111-57대	157			
			111-166대	9			
			111-171대	34	■ 공동개발 지정		
			111-172대	105			
			111-174대	166			
			111-175대	26			
			소계	497	※필지수 : 6개		
준 5BL	5,629	1	111-183대	1,718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2	111-301창	1,316			
			111-238대	2	■ 공동개발 지정		
			소계	1,318	※필지수 : 2개		
		3	111-197대	13			
			111-239대	63			
			111-241대	28			
			111-242대	6	■ 공동개발 지정		
			111-243대	63			
			111-301창	107			
			111-344창	1,427			
			소계	1,707	※필지수 : 7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5BL (계속)	(5,629)	4	111-232대	41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5	111-244대	133			
		6	111-233대	110	※ 비건축부지		
		7	111-236도	228	※ 비건축부지		
준 6BL	251	1	111-182대	249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111-330대	2			
			소계	251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계	53,077	-			53,077	일반상업지역
상 1BL	1,524	1	111-9대	24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22대	11		
			111-23대	502		
			111-31대	26		
			111-137대	141		
			111-406전	40		
			111-435대	1		
			111-437대	2		
			111-439대	7		
			111-457전	5		
		소계	759	※필지수 : 10개		
		2	111-24대	337		
		3	111-36철	89	■ 공동개발 지정	
			111-54전	308		
			111-55대	31		
			소계	428	※필지수 : 3개	
상 2BL	9,141	1	66-1제	348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6-58제	5		
			111-38대	258		
			111-39대	22		
			111-40대	311		
			111-41대	278		
			111-42대	374		
			111-108도	5		
			111-111대	58		
			111-112대	53		
			111-113도	56		
			111-114대	188		
			111-115대	185		
			111-116대	112		
			111-117대	136		
			111-118대	136		
			111-119대	15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2BL (계속)	(9,141)	1	111-120대	46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121대	274		
			111-122대	238		
			111-441대	15		
			111-443대	14		
			66-59도	10		
			소계	3,274		
		2	66-1제	278	■ 공동개발 지정	
			111-43대	104		
			111-44대	390		
			111-45대	75		
			111-123대	334		
			111-124대	516		
			111-125대	552		
			111-126대	300		
			111-127대	145		
			111-202대	40		
			111-203대	65		
			111-204대	57		
			111-205대	121		
			111-322대	95		
			소계	3,072		
		3	66-5대	2,794	■ 공동개발 지정	
			66-60도	1		
			소계	2,795		
상 3BL	18,385	1	66-41제	232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7대	18		
			111-48대	103		
			111-49대	165		
			111-50대	188		
			111-51대	40		
			111-52대	162		
			111-129대	44		
			111-130대	15		
			111-131대	165		
			111-132대	73		
			111-133대	175		
			111-135대	109		
			111-201대	290		
			111-319대	5		
			111-325대	6		
			111-326대	120		
			소계	1,910		
		2	66-41제	461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45		
			111-53대	327		
			111-136대	99		
			111-159대	61		
			111-345대	105		
			111-346대	47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3BL (계속)	(18,385)	2 (계속)	111-347대	101	■공동개발 지정 (계속)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348도	46		
			111-349대	189		
			111-350대	417		
			111-368대	150		
			소계	2,048		
		3	66-41제	335	■공동개발 지정	
			111-7대	164		
			111-160대	60		
			111-354대	104		
			111-355대	39		
			111-356대	294		
			111-357대	234		
			111-362대	226		
			111-363대	240		
			111-364대	60		
			111-365대	73		
			111-366대	61		
			111-367대	83		
			111-369도	130		
			소계	2,103		
		4	111-149대	61	■공동개발 지정	
			111-302대	5		
			111-358대	784		
			111-393대	62		
			소계	912		
		5	66-19도	15	■공동개발 지정	
			111-149대	15		
			111-303대	295		
			111-359대	319		
			111-393대	2		
			소계	646		
		6	66-41제	398	■공동개발 지정	
			111-360대	123		
			111-361대	276		
			111-475대	226		
			111-476대	85		
			소계	1,108		
		7	66-24잡	9,658		
상 4BL	6,797	1	111-11대	3,945	-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소계	3,945		
		2	111-151대	1,113	■공동개발 지정	
			111-155대	1,739		
			소계	2,85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상 5BL	5,833	1	111-143대	2,745	■공동개발 지정 -상5BL+상6BL ※전체 공동개발 시에만 가능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152대	264			
			소계	3,009			
		2	111-147대	1,048	■공동개발 지정		
			112-2도	3			
			112-3대	515			
			소계	1,566			
		3	111-73대	7	■공동개발 지정		
			111-74대	17			
			111-144대	572			
			111-145대	580			
			111-269대	25			
			111-270대	57			
			소계	1,258			
상 6BL	2,519	1	111-71대	127	■공동개발 지정	■가구간 공동개발 권장	
			111-72대	35			
			111-74대	25			
			111-75대	99			
			111-76대	278			
			111-77대	111			
			111-146대	257			
			소계	932			
		2	111-37대	80	■공동개발 지정		
			111-71대	218			
			111-72대	237			
			111-146대	273			
			소계	808			
		3	111-37대	473	■공동개발 지정		
			111-61대	97			
			111-62대	63			
			111-72대	26			
			111-146대	37			
			111-166대	83			
			소계	779			

주1) 상5BL, 상6BL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내공지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함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7BL	8,936	1	111-70	63	■공동개발 지정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79대	142		
			111-80대	281		
			111-81대	267		
			111-82대	215		
			111-83창	268		
			111-84대	274		
			111-85대	112		
			111-86대	225		
			111-89대	61		
			111-90대	73		
			111-91대	69		
			111-92대	79		
			111-93대	56		
			111-94대	112		
			111-148대	255		
			111-398대	225		
			111-423도	312		
			소계	3,089	※필지수 : 18개	
		2	111-58대	188	■공동개발 지정	
			111-59대	240		
			111-63대	31		
			111-64대	106		
			111-65대	69		
			111-66대	340		
			111-67대	370		
			111-68대	364		
			111-69대	317		
			111-70대	163		
			111-138대	33		
			111-139대	34		
			111-140대	90		
			111-141대	106		
			111-142대	315		
			111-167대	256		
			111-193대	2		
			111-194도	127		
			111-374대	60		
			111-431대	78		
			소계	3,289	※필지수 : 20개	
		3	111-162대	357	■공동개발 지정	
			111-163대	501		
			111-164대	456		
			111-167대	31		
			111-193대	789		
			111-253대	189		
			111-431대	235		
		소계	2,558	※필지수 : 7개	※획지수 : 3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허용용도(A)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1	주 1~6BL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기정	A2	공동 1BL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기정	A3	준 1~2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 (1~11Lot) 준 2BL (1~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준 1BL (1~11Lot) 준 2BL (2~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2BL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판매시설 중 상점 ○ 주거복합건축물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4	준 3~5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준 3BL (1Lot) ○ 준 5BL (4~5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준 3BL (1~2Lot) ○ 준 4BL ○ 준 5BL (2~4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준 3~5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기정	A5	준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중 상점
기정	A6	상 1BL, 상 4~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업무시설
기정	A7	상 2~3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업무시설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8	상 7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 주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 주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 주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 주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 주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 주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 주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장용도(B)

○ 권장용도 지정을 통하여 구역특성 반영 적극 유도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B1	주 1BL	○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기정	B2	주 2BL ~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3) 불허용도(C)

○ 도시형생활주택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C1	전 체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 고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80% 이하	

주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 80% 적용.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0% 적용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2) 용적률

○ 개발 규모와 연계한 용적률 계획 수립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반시설 의무부담비율 (순부담)	비 고
주 1BL ~ 6BL		200%	230%	250%	-	
공동 1BL		180%	200%	250%	43.1%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1~6Lot) 준 3BL(1Lot) 준 5BL(4~5Lot)	200%	240%	-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170%	200%	-	-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300%	350%	400%	-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5BL(2~4Lot)	300%	350%	400%	5% 이상	
	준 3BL(1~2Lot) 준 4BL	300%	350%	400%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200%	240%	300%	10% 이상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2, 5BL	300%	400%	500%	12% 이상	
	준 3, 4BL	300%	400%	500%	-	
준 6BL		200%	240%	-	-	
상 1BL		200%	230%	250%	-	
상 2 BL	1종일반주거→일반상업	200%	230%	250%	-	기존용적률은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일반상업	700%	800%	1,000%	-	
상 3 ~ 6BL		700%	800%	1,000%	-	
상 7BL		350%	420%	500%	7.5%이상 (개설부담)	

주1) 준1·2BL을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음(적용 용적률 : 기준 200%, 허용 240%, 상한 300%)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반시설의무부담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3-5-3 규정 적용(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상2BL, 상3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률(%)	비 고
~ 10% 미만	1,000%	
10% 이상 ~ 20% 미만	950%	
20% 이상 ~ 30% 미만	900%	
30% 이상 ~ 40% 미만	850%	
40% 이상 ~ 50% 미만	800%	
50% 이상 ~ 60% 미만	750%	
60% 이상 ~ 70% 미만	700%	
70% 이상 ~ 80% 미만	510%	

- 준주거지역 (준1BL, 준2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률(%)	비 고
~ 10% 미만	500%	
10% 이상 ~ 20% 미만	480%	
20% 이상 ~ 30% 미만	460%	
30% 이상 ~ 40% 미만	440%	
40% 이상 ~ 50% 미만	420%	
50% 이상 ~ 60% 미만	400%	
60% 이상 ~ 70% 미만	380%	
70% 이상 ~ 80% 미만	330%	
80% 이상 ~ 90% 미만	300%	

- 인센티브 계획

구분	완화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친환경 건축물	옥상조경(권장)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 -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3	위치 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 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규제)	기준용적률 × 0.03	

주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한다.

주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 공동 IBL은 기반시설의무부담비율 준수 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기 산정식을 적용하지 않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최저 층수	최고 층수	비 고	
주 1BL ~ 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공동 1BL		공동주택(아파트)	5	-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2BL 준 3BL(1Lot) 준 5BL(4~5Lot)	-	-	4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	-	10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3BL(1~2Lot) 준 4BL 준 5BL(2~4Lot)	-	-	10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외 기타용도	-	10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 2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준 3 ~ 5BL	-	-	10
준 6BL		-	-	4	
상 1BL		-	3	6	
상 2 ~ 3BL		주거복합, 업무시설	5	-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4 ~ 6BL		업무시설	5	-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7BL		-	-	13m 이하 (100m 이하) 19m 이하 (200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 (장도포대지) 경계

주1)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라) 건축물에 대한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 고
건 축 한계선	대로 1-20호선 변	1m	○ 전면공지로 조성 ○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 2-74호선 변	2 ~ 3m	
	대로 3-76호선 변	2m	
	중로 1-90호선	2m	
	중로 1-302호선 변	1 ~ 5m	
	중로 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 3-2호선 변	2m	
	소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 2-9, 2-10호선 변	2m	

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주2)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구 분			내 용
저 층 부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출입구 높이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
옥 상 부			○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불허
공동주택 및 주거 복합용도 건축물			○ 탑상형 ○ 획일적 패턴 지양 및 형태 및 입면상 변화로 조형성 향상

○ 건축물의 외관

구 분	내 용
재료 및 색채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 사용
야간조명	○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물외벽 및 조형물, 보도바닥 등에 조명을 투시하는 야간환경조명 설치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 하는 경우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대지 내 공지

구 분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 개선 - 대로 1-20호선 변 : 1m - 대로 2-74호선 변 : 2 ~ 3m - 대로 3-76호선 변 : 2m - 중로 1-90호선 : 2m - 중로 1-302호선 변 : 1 ~ 5m - 중로 2-58, 2-110호선 변 : 2m - 중로(소래) 3-2호선 변 : 2m - 중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 2m - 소로 2-9, 2-10호선 변 : 2m	건축한계선 부분
공개 공지	쌈지형 공지	○ 일반상업용지(상2-1, 상2-2, 상3-1, 상7) : 4개소 ○ 준주거용지(준4-3) : 1개소	위치지정
대지안조경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용지 : 폭 10 ~ 15m(완충녹지)	

주1)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차가 없어야 함

주2) 공지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의 설치를 금함

주3) 대지내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시행

나) 교통처리계획

-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흐름 저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대로 1-20호선 변 대로 2-74호선 변 대로 3-76호선 변 중로 1-90호선 변 중로 1-302호선 변
공공보행통로	○ 준주거용지(준4-3, 4) : 1개소	위치지정

주1)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 옥외광고물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 해당구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향후, 고시 사항에 따라 특정광고물설치기준을 준수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임

경미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②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③ 공공보행통호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IV. 지형도면: 변경 없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42-13 (간석동) 외 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42-13 (간석동)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42-13 (간석동)	202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0번길 17 (만수동)	202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0번길 19-1 (만수동)	202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0번길 19-3 (만수동)	202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 24-9 (만수동)	202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 24-7 (만수동)	202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3번길 35 (고잔동)	202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8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42-13 (간석동)	2009. 7. 6.	만월산을 통과하는 도로로 산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2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로 42-13 기초구간에위치하여42-13을건물번호로부 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0-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0번길 17 (만수동)	2009.11.16.	구월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말로80번길 17 기초구간에위치하여17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2-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3번길 35 (고잔동)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113번길 35 기초구간에위치하여35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5번길 23 (구월동)	2009.11.16.	당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당좌로5번길 23 기초구간에위치하여23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6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31번길 50 (간석동)	2009.11.16.	벽돌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375번길 76 기초구간에위치하여76을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66번길 33-8 (만수동)	2009.11.16.	복개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복개동로66번길 33-8 기초구간에위치하여33-8을건물번호로부 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19, 7-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16번길 17 (구월동)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16번길 17 기초구간에위치하여17을건물번호로부여	